## 〈 수 정 안 〉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학대 예방 및 피해이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 중 "제공할 수 있다"를 "제공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1조 중 "시행할 수 있다"를 "시행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2조 중 "시행할 수 있다"를 "시행하여야 한다"로 한다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조 례 안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피해아동 및 가족지원) 구      | 제9조(피해아동 및 가족지원)  |
| 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동학대 재발 방지, 건전한 가정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, 의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료적・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지원을 <u>제공할 수 있다</u> .   | <u>제공하여야 한다</u> . |
| 제11조(교육) 구청장은 법 제26조    | 제11조(교육)          |
| 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<u>시</u> | <u>入</u>          |
| 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| 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|
| 제12조(행사와 홍보) 구청장은 아     | 제12조(행사와 홍보)      |
| 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를 <u>시행할 수 있다</u> .     | <u>시행하여야 한다</u> . |